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(전용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34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25.

발 의 자 : 전용기 · 조계원 · 민병덕
양문석 · 전진숙 · 임호선
남인순 · 강준현 · 권칠승
박용갑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비만은 심뇌혈관계 질환, 제2형 당뇨병, 혈압 등 다양한 질환들을 동반하고 크게는 사망에 이르는 원인이 됨. 여러 가지 연구들에 의하면 체중조절만으로도 비만과 관련된 질환, 증상 및 이로 인한 합병증을 임상적으로 크게 감소시킴. 또한 비만 자체가 질병으로 분류되어 있지만,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.

현행법은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금연과 절주 위주의 법안으로 구성됨. 비만은 다양한 질환의 원인으로 꼽히지만 비만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명확한 법이 없음.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된 비만에 대해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함.

이에 이 법의 대상 사업에 비만 치료를 추가하고, 비만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치료를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하고 비만율을 낮춤으로써 국민

건강증진을 높이기 위함임(안 제8조 및 제8조의5 신설).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禁煙 및 節酒運動등)”을 “(금연, 절주, 비만 치료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”를 “직접흡연과 간접흡연, 과다한 음주와 비만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금연 및 절주”를 “금연, 절주, 비만”으로 한다.

제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8조의5 (비만 예방 및 치료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만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, 비만 인구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또한 이를 위한 조사·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비만에 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만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시설 및 설비를 확보하고,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8條(禁煙 및 節酒運動등) ①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<u>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</u> 과 <u>과다한 음주가</u>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·홍보하여 야 한다.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<u>금 연 및 절주</u>에 관한 조사·연구 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 할 수 있다. ④ ~ ⑥ (생 략) <u><신 설></u>	第8條(금연, 절주, 비만 치료 등) ① ----- <u>직접흡연과 간접흡연, 과다한</u> <u>음주와 비만이</u> ----- -----. ② ----- <u>금연,</u> <u>절주, 비만</u>----- ----- --. ④ ~ ⑥ (현행과 같음) 제8조의5 (비만 예방 및 치료) ① <u>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만의</u> <u>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</u> <u>고, 비만 인구 감소를 위하여 노</u> <u>력하여야 한다. 또한 이를 위한</u> <u>조사·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할</u> <u>수 있다.</u> ② 제1항에 따른 비만에 대한 <u>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</u> <u>다.</u> ③ <u>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</u> <u>만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시설</u> <u>및 설비를 확보하고, 그 시설의</u>

	<u>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</u>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